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3년 1월 4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1월 5일

3. 제안이유

가. 미동산수목원의 무료 개방에 따라 입장료 유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무료입장 전환에 따라 종전에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단체” 등 입장료 징수기준과 관련된 용어 정의를 삭제(안 제2조)

나. 입장권 매표와 관련된 문구 삭제(안 제6조)

다. 입장료 징수기준을 규정한 별표를 삭제하고, 체험학습프로그램의 재료비 징수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8조 및 별표)

라. 입장료 면제 및 할인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9조)

마. 요금표 등의 게시 조항 삭제(안 제10조)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5. 검토내용

가. 본 개정안은 '22년도 미동산수목원 유료화 시행으로 관람객 편의 증진과 입장료 수익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시행 당시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입장객 감소(18.9%), 낮은 수입액(무료입장객 87%), 민원증가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수목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입장료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나. 입장료 관련 조문은 현행 제2조(정의), 제6조(관람과 입장권 매표 및 입장시간), 제8조(입장료 등), 제9조(입장료 면제 및 할인), 제10조(요금표 등의 게시)가 있으며, 무료화 방침에 따른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향후 입장객 유치를 통한 수목원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짐.

다. 기타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22. 12. 9. ~ '22. 12. 29.)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6. 검토의견

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미동산수목원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목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입장료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다만, 기존에 무료로 운영하던 수목원을 2022년도에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에 대해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수목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임.